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및 제6조)

3. 검토의견(건설전문위원 안석수)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점용료 등의 징수 권한 수임 기관의 직명을 “한강관리사업소장”에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와 감면의 근거 규정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점용료 등의 징수권한 수임기관의 직명을 변경하고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와 감면의 근거 규정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03.1.10)과 동조례 시행 규칙 개정(2003.1.15), 하천법, 지방세법의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것으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강관리사업소장”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세법 제41조”를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물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라 함은 지하도상가 구역에 있는 상가와 지하보도를 말한다.
2. “상가”라 함은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점포와 점포의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공조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등의 부대시설 및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부수적 시설물을 포함한 것을 말